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용부담금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 관련 기사

- 8. 26.(수) 세계일보, “국책은행, 장애인 외면…산은, 10억 물고도 고용 기피”

2. 설명 내용

-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가·자치단체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민간기업 사업주(이하 ‘사업체’)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91년부터 시행 중임
-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로 미달성 사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며,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 중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명단을 공표하고있음
- * 기준 : (공공) 의무고용률(3.8%) 미만 / (민간) 의무고용률(3.1%)의 절반(1.55%) 미만
- ‘25년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체(33,452개소)의 장애인 고용률은 3.27%로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며,
- 부문별 장애인고용률은 정부부문 3.85%, 공공기관 4.17%, 민간기업 3.10%로,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제 도입 이후 최초로 의무 고용률(3.1%)을 달성하였음

【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3.10		3.12		3.17		3.21		3.27	
정부(공무원)	3.83	2.97	3.89	2.93	3.84	2.86	3.84	2.85	3.85	2.85
정부(근로자)		5.83		6.16		6.14		6.12		6.09
공공기관	3.78		3.84		3.90		4.05		4.17	
민간기업	2.89		2.91		2.99		3.03		3.1	

- 다만,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33,452개소 중 의무고용 이행률은 43.3%로 저조한 가운데, 다수 사업체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 '25년 8,361개 사업체에서 8,898억원의 고용부담금 발생

** 10년 이상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공표 대상 51개소 존재

-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인식 등을 토대로, 고용부담금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9월 중 노·사 및 장애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임

- 아울러,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21년부터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여건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고용 컨설팅*을 제공 중이며, 장애인 직무개발 사업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 해나갈 계획임

* 장애인 고용 컨설팅 실적('25): 공공부문 431개소, 민간기업 266개소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책임자	과 장	고혜연 (044-202-7481)
		담당자	사무관	남덕렬 (044-202-7482)

